



Feature articles.I | AI, 3년만에 재 발생

AI 방역 추진 대책

농 림 부

1. 발생현황

- 전북 익산에서 11. 22일 발생한 의사 AI 정밀 검사 결과 ‘고병원성(H5N1)’으로 판명(11. 25)
 - 고병원성은 가금류 폐사율이 75% 이상이고 전염성이 강하며, 금번 발생농장도 감염된 계 사 내 닭 6천마리가 4일만에 모두 폐사
- 평택(11. 23)과 양평(11. 24)에서 신고된 의심 죽은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으며, 충남 서 산(11. 27) 신고건은 대장균증으로 확인
- 11. 27일 오후 최초 발생 농장으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경계 지역내 육용종계 농가에서 신고된 의심죽은 ‘고병원성’으로 판명(11. 28)

2. 주요 방역 조치사항

- 지난 11월 22일 익산 소재 농가의 AI 발생 확 인후 국가안전보장회의 매뉴얼에 따라 「주의」 경보를 발령하고 긴급 방역조치를 하였음.
 - 국립수의과학검역원, 전북도, 익산시 각기 상황실 설치, 비상근무 중
 -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오염지역(반경 0.5km),

위험지역(3km), 경계지역(10km)을 설정하고 가축 · 차량 등의 이동통제를 실시 중

- 특히 오염지역내 가축(20만수)은 고병원성 AI 판명(11. 25) 직후인 11월 26일부터 인력 133명을 투입, 살처분 · 매몰 중
- 보건복지부와 협조, 방역인력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보호장구를 완비토록 하여 노출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
- 고병원성 AI 발표(11. 25) 전 · 후 관련 보도 가 증가하면서 닭고기 · 계란 소비량이 줄었 고 가격은 불안정한 모습
- 국무총리 방역상황 격려 및 삼계탕 오찬(11. 26), 농림부 · 보건복지부 합동기자회견(11. 27) 등을 통해 소비감소 적극 대처
- 농림부 차관보 주재, 가축방역협의회 개최(11. 29)
 - 위기경보 발령을 ‘주의’ 단계에서 ‘경계’ 단계
 - 살처분 범위 3km로 확대(11. 30)
- 위험지역(반경 3km내)사육가금 8농가 252천 마리 살처분 진행(12. 3)

3. 향후 방역 대책

- 방역지역별 위험정도에 따라 살처분·폐기, 반출입 금지 등을 실시
 - ① 오염지역(반경 500km)내 사육 가금 등 살처분 추진
 - 1차 발생지역 5농가 143천수 살처분 완료
 - 2차 발생농가 가금 12천수 살처분 완료(11. 30)
 - ② 위험지역(반경 3km)내 가축·분뇨 등의 반출입 금지하고, 생산일은 전량 폐기조치
 - ③ 경계지역(반경 10km)내 사육 닭·오리 등은 가축방역관의 지도·감독하에 반출입 허용
 - 발생농장산 종란이 반입된 부화장 2개소는 폐쇄하고 부화 중인 계란 600여만개도 폐기 조치
 - 도축장 2개소는 가축방역관 감독하에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도계를 진행
 - ※ 가축방역관은 익산시 소속 수의사 1, 공수의 6명을 기지정
- 전국의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해 매일 1회 전화·방문 예찰 실시
 - 의심축 발생시 신속 신고 유도, 철새도래지 분변검사 강화 등
 - ※ 매년 북방철새 도래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AI 특별·방역대책 추진 중

4. 피해농가 지원대책

〈살처분 대상농가〉

- 「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」(농림부 고시)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산정하여 조기 지급 추진
 - 가축방역관리 농가별 살처분 대상 가축의 일령과 종류(산란계·종계·육용계) 등을 확인하고 시·군에서 보상금 산정
 - 2006 농림부 예산 중 불용액을 이·전용하여 충당하고 추가 대규모 소요발생시 예산당국과 협의 확보

○ 살처분 대상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지원방안 검토

- 살처분 후 재입식 출하때까지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, 수당 소득단가, 사육규모와 입식 제한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

〈이동제한 지역 농가〉

- 위험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알은 살처분 보상기준에 준하여 폐기하고 보상
- 위험지역내 가축은 경영안정자금, 가축입식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출하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간접지원하는 방안 강구
 - 중체로 인한 상품성 감소로 판매 애로시 이동 제한 해제후 수매 방안 검토